

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 주요내용

공포 : 1995. 12. 29 법률 제5098호, 시행 : 1996. 6. 30

<개정이유>

해양오염사고 발생시 해상 방제기능을 내무부(해양경찰청)로 일원화하여 대형오염사고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대량저유시설에 방제선 배지, 방제업 등을 신설하여 민간방제 활성화 유도

<주요 개정내용>

- 적용 범위 확대(제3조 제1호)-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안에서 행하여진 해양오염
- 영해법개정 : '95. 12. 6 법률 제4986호 영해법 개정으로 명칭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으로 하고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접속수역 신설
- 접속수역 : 영해기선에서 24해리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영해를 제외한 해역으로 하며, 해양오염방지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범위에 해당
- 추후 배타적 경계수역(EEZ) 선포시 200해리 내의 해역 적용범위에 포함 예정
- 환경부장관이 해양환경보전정책을 총괄적으로 다루도록 함(제4조)
- 특별관리해역안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 신설(제4조의 4 제2항)
- 해역청소등 수질개선조치의 강구를 해역관리청이 하도록 하고, 오염원인자 (오염의 원인을 제공할 우려가 많은자 포함)에 대하여 오염물질 제거등 필요한 조치명령권 부여(제4조의 5)

- 국가는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배출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시 배출자에게 배상청구 신설(제4조의 6)
- 기름오염방지설비 면제선박인 소형선박에 대하여 폐유저장용기 비치의무화(제6조)
 - 유조선 50톤 미만 일반선박 100톤 미만
- 선박내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 및 폐유, 폐기물은 자가처리시설 방제·청소업, 저장시설에 인도 범위 확대(제8조 제1항, 제17조의 2)
- 선박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인도조항 신설
- 소각기록부 관련규정 삭제
 - 구 해양오염방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각기록부 관련규정 삭제
- 선상기름오염 비상계획서 비치의무 신설 (제10조 제1항)
 - 유조선 150톤 이상, 일반선박 400톤 이상
 - 선박의 소유자는 기름오염비상계획서를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의 검인을 받아 선박에 비치(검사의 대행가능 제28조 제1항)
- 포장유해물질 운송방법 신설(제15조의 2)
 -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포장표시 및 적재방법에 적합하게 운송

- 포장유해물질 배출금지 신설(제15조의 3)
- 폐기물기록부를 폐기물운반선의 일반선박에서도 비치, 기록하여 적정 관리토록 추가(제22조)
-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기름등 폐기물을 자가처리 시설, 방제·청소업, 저장시설에 인도 규정 신설(제34조 제5항)
- 해양시설내 기름등 폐기물 기록부 및 기름오염비상계획서 작성 비치의무 신설(제36조)
 - 해양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해양시설내에 기름등 폐기물 기록부 비치(2년 경과후 시행)
 - 해양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기름오염비상계획서 작성 내무부장관의 검인(제10조)을 받아 해양시설내에 비치(2년 경과후 시행)
- 방제업, 유창청소업의 등록을 내무부장관으로 변경 하여 민간방제업무 활성화 방안 유도(제37조)
 - 유창청소업 허가 → 내무부장관에게 등록
 - 방제업(신설) → 내무부장관에게 등록
- 선박, 해양시설 발생 폐유처리 범위를 확대하여 육상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 하도록 합리화(제40조)
 - 저장시설의 설치의무 대상범위 확대(제46조 제1항)
 - 항만관리청,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을 선박으로 부터 공급(수급)하는 해양시설의 설치 운영자, 수리조선소의 설치·운영자 저장시설 설치의무
 - 저장한 기름등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수처리업자에게 인도하여 최종처리
 - 저장시설 설치, 운영자는 기름 등 폐기물의 관리대

장비치

- 소량배출자에도 방제의무 부여(제48조의 2)
- 유조선 및 기름저장시설 소유자에 대하여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 배치의무 부여(제49조의 2)
 - 다른 의무자와 공동배치 가능(2년 경과후 시행)
 - 이미 갖춘자에게 위탁배치 가능
- 해상방제 및 해안방제 방제조치 행정기관구분(제50조)
 - 해상방제 : 내무부장관(해양경찰청장)
 - 해안방제 : 시장, 군수, 구청장
 - 해안시설물 : 항만청장, 수산청장
- 방제대책본부 설치규정 신설(제51조)
 - 방제대책본부장 : 해양경찰청장
- 폐선의 해역관리청 제거명령권 부여(제53조)
 - 해역관리청의 제거명령권 부여 및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선박을 해역관리청이 관리 또는 제거할 수 있음
- 선박해철작업 승인기준 완화(제53조 제4항)
 - 해양오염방지계획 승인 → 신고로 완화
 - 신고내용 미흡 및 불이행시 → 시정명령
-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기간 연장 및 교육이수 대상범위 변경(제67조)
 - 교육기간 3년 → 5년
 - 폐유처리 청소업 → 방제 청소업 기술요원
- 해양오염방지법상 내무부장관의 권한을 해양경찰청장,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제69조) ◉ <해양경찰청 제공>